

<p>항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</p> <p>3.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제12조제1항제9호중 “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”를 “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”로 하고, 동 조동항제13호를 동 조동항제16호로 하며, 동 조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 조제2항중 “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”를 “제1항제1호·제2호·제8호 내지 제12호 및 제16호”로 한다.</p> <p>13. 유통사업자 14. 건설사업자 15. 관광호텔사업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조례 제3517호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 부칙 제2항중 “2000년 6월 30일”을 “2001년 6월 30일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의 산업경제국(소비자보호과)란 중 사무명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							
<p>별표의 환경관리실(폐기물시설과)란 중 사무명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주 관 국</th> <th>사 무 명</th> <th>근거법령 (위임근거)</th> <th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산업경제국 (소비자 보호과)</td> <td>7.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 및 변경등록 나.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다. 휴업 및 폐업 신고의 수리 라.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관계장부·서류의 확인·열람 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td> <td>○ 담배사업법 제13조 ○ 동법 제15조 ○ 동법 제22조의2제1항 ○ 동법 제24조제1항, 제2항 ○ 동법 제29조</td> <td>구청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주 관 국	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	산업경제국 (소비자 보호과)	7.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 및 변경등록 나.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다. 휴업 및 폐업 신고의 수리 라.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관계장부·서류의 확인·열람 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○ 담배사업법 제13조 ○ 동법 제15조 ○ 동법 제22조의2제1항 ○ 동법 제24조제1항, 제2항 ○ 동법 제29조	구청장
주 관 국	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					
산업경제국 (소비자 보호과)	7.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 및 변경등록 나.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다. 휴업 및 폐업 신고의 수리 라.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관계장부·서류의 확인·열람 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○ 담배사업법 제13조 ○ 동법 제15조 ○ 동법 제22조의2제1항 ○ 동법 제24조제1항, 제2항 ○ 동법 제29조	구청장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주 관 국</th> <th>사 무 명</th> <th>근거법령 (위임근거)</th> <th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환경관리실 (폐기물 시설과)</td> <td>2.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휴업·폐업 및 재개업신고의 수리 다. 업무에 관한 보고·자료의 제출명령, 관계서류·시설·장비 등의 검사 라.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td> <td>○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○ 동법 제42조 ○ 동법 제43조제1항, 제2항 ○ 동법 제45조 ○ 동법 제63조</td> <td>구청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주 관 국	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	환경관리실 (폐기물 시설과)	2.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휴업·폐업 및 재개업신고의 수리 다. 업무에 관한 보고·자료의 제출명령, 관계서류·시설·장비 등의 검사 라.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○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○ 동법 제42조 ○ 동법 제43조제1항, 제2항 ○ 동법 제45조 ○ 동법 제63조	구청장
주 관 국	사 무 명	근거법령 (위임근거)	수임기관					
환경관리실 (폐기물 시설과)	2.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휴업·폐업 및 재개업신고의 수리 다. 업무에 관한 보고·자료의 제출명령, 관계서류·시설·장비 등의 검사 라.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○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○ 동법 제42조 ○ 동법 제43조제1항, 제2항 ○ 동법 제45조 ○ 동법 제63조	구청장					